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글/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변호사의 법률 서

비스를 이용해본 소비자라면 한번쯤 변호사 과오로 인한 불만과 피해를 경험했을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른 법적 분쟁이 증가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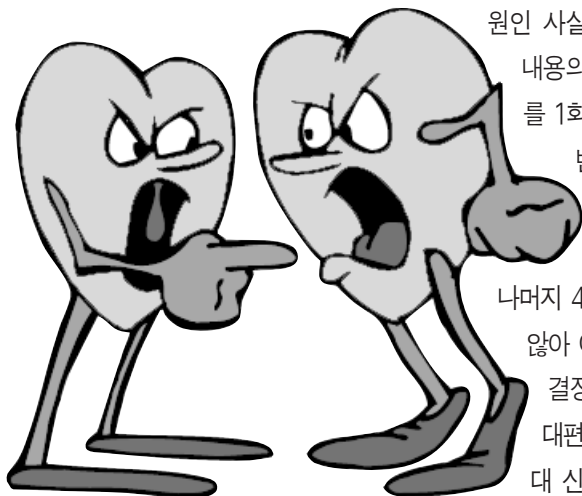
변호사의 책임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알선 비리·수임료 과다·횡령 등 법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변호사의 직무상 과오가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가 위임 받은 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단순한 착오·법률 지식의 부족·불성실 등으로 손해를 끼쳐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한다.

사 건

K변호사는 91년 7월경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Y로부터 이혼 청구 소송의 소송 대리를 위임 받고 수임료로 3백만원을 받았다. K변호사는 Y로부터 부정 행위를 청구 원인으로 하여 제기된 소송 대리를 위임 받고도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를 1회 제출하고 5차례의 변론 기일 중 한차례만 출석해 답변서만을 진술했다.

나머지 4차례는 출석하지도 않아 이혼 청구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상대방 증인에 대하여 반대 신문도 하지 못해 패



소, Y는 이혼당했다. 이에 Y는 K변호사에게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소송 대리를 업으로 하는 변호사가 일반인으로부터 가사 사건 등의 소송 대리를 위임 받은 경우 사건을 면밀히 숙지하고 소송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의뢰인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회나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의뢰인의 손해를 방지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표준으로 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내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K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위반한 소송 수행을 한 이상 이로 인하여 소송 결과와는 상관 없이 Y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K는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의 범위는 의무 위반의 형태·수임료·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결과 등을 고려해 4백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변호사 과오를 인정한 판례도 그리 많지 않은 현실에서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 수행으로 사건 의뢰인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변호사 과오 소송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는 변호사 과오도 소비자 문제의 한 유형으로 접근하여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㉞